

1. 개정이유

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, 관할역 관리책임자등이 작업 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·보관하도록 하는 「철도안전법」(법률 제19984호, 2024. 1. 9 공포, 2024. 4. 1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작성·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경우 운행안전관리자등이 작성·보관하여야 하는 내용 규정 (안 제76조의7 제2항)
- 나.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서류 제출기한 명확화 (안 제26조 제1항)
- 다. 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제출의 면제 가능한 경우 규정 (안 제92조의6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응시 전”을 “응시원서 접수시”로 한다.

제76조의7의 제목 “(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)”을 “(철도운행안전관리자등의 준수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4호 중 “포함한다”를 “포함한다. 이하 조에서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 관련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작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작업일, 작업시간, 작업구간, 작업내용, 작업인원
2. 작업에 관한 협의내용 및 승인내용
3. 협의요청자와 협의대상자의 성명
4. 그 밖에 작업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

제92조의6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76조의7제2항에 따라 작업 관련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0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, “1월 1일 전”을 “7월 1일 전”으로 한다.

별표 7 제7호라목 중 “받으려”를 “받거나 필기시험에 응시하려”로 한다.

별표 11의4 제2호나목1) 및 2) 외의 부분 중 “관제자격증명”을 “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4월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) 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응시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 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서류는 기능시험 <u>응시 전까지</u> 제출할 수 있다.	제26조(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 <u>응시원서 접수시</u> ---- ----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6조의7(<u>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</u>)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	제76조의7(<u>철도운행안전관리자등의 준수사항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(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·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<u>포함한다</u>) 및 작업 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포함한다. 이하 조에서 같다</u> -----

5. ~ 7. (생략)

<신설>

제92조의6(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) ① (생략)

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 관련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작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작업일, 작업시간, 작업구간, 작업내용, 작업인원
2. 작업에 관한 협의내용 및 승인내용
3. 협의요청자와 협의대상자의 성명
4. 그 밖에 작업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

제92조의6(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단, 제76조의7제2항에 따라 작업 관련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

	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

[별표7]

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

(제20조제3항 관련)

(제1호~제6호 생략)

7. 일반사항

가. 철도관련법은 「철도안전법」과 그 하위법령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.

나.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,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운전업무 수행경력이란 운전업무종사자로서 운전실에 탑승하여 전방 선로감시 및 운전관련 기기를 실제로 취급한 기간을 말한다.

다. 모의운행훈련은 전(全) 기능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.

라.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필기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.

마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훈련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철도운전 관련 학과의 정규과목 이수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론교육의 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.

바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론교육·기능교육 훈련 시간의 합이 가장 적은 기준을 적용한다.

[별표11의4]

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등(제38조의7제2항 및 제38조의9 관련)

1. 과목

관제자격증명 종류	학과시험 과목	실기시험 과목
가. 철도 관제자 격증명	• 철도 관련 법 • 관제 관련 규정 • 철도시스템 일반 • 철도교통 관제 운영 • 비상 시 조치 등	• 열차운행계획 • 철도관제 시스템 운용 및 실무 • 열차운행선 관리 • 비상 시 조치 등
나. 도시철도 관 제자격증명	• 철도 관련 법 • 관제 관련 규정 •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• 도시철도교통 관제 운영 • 비상 시 조치 등	• 열차운행계획 • 도시철도관제 시스템 운용 및 실무 • 도시열차운행선 관리 • 비상 시 조치 등

비고

1. 위 표의 학과시험 과목란 및 실기시험 과목란의 “관제”는 노면전차 관제를 포함한다.
2. 위 표의 “철도 관련 법”은 「철도안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.
3. “관제 관련 규정”은 「철도차량운전규칙」 또는 「도시철도운전규칙」, 이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른 규정 등 철도교통 운전 및 관제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.

2. 시험의 일부 면제

가.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

제1호의 학과시험 과목 중 철도 관련 법 과목 및 철도·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과목 면제

나.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

1) 학과시험 과목

제1호가목의 철도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 과목 중 철도 관련 법 과목 및 관제 관련 규정 과목 면제

2) 실기시험 과목

열차운행계획,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과목 면제

(이하 3호 생략)